

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3. 6. 16 선고 2022나222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춘천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

담당변호사 박경준

피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송호, 이석원

변 론 종 결 2023. 5. 19.

판 결 선 고 2023. 6. 16.

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. 10. 5. 선고 2021가합30740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563,641,000원의 한도 내에서,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, 2016. 7. 15.자 사업시행자 변경동의를, 2016. 7. 20.자 인허가 및 부담금 관련 권리승계 합의를, 2016. 8. 9.자 허가권 권리 · 의무 승계 합의를 각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63,641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하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12면 11행부터 제14면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4. 사업시행자 지위 및 실시계획인가, 무형의 사업권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2016. 7. 15.자 사업시행자 변경동의에 관한 취소 청구

원고는, 2016. 7. 15.자 사업시행자 변경동의가 B이 사업시행권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고, 춘천시장이 피고를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므로, 이는 피고와 B이 사전에 통모한 일련의 사업권 양도행위의 일부로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.

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

인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). 갑 제3호증의 기재에

의하면, 2016. 7. 15.자 사업시행자 변경동의서의 수신자는 “춘천시장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, 그

내용도 B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는 것인바,

이는 B의 원고에 대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

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므로(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4다21923

판결 등 참조), B의 원고에 대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2016. 7. 15.자 사업시행자 변경동의를 이

사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나아가 원고는 2016. 7. 15.자 사업시행자 변경동의서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위의 실체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와 실시계획인가 및 무형의 사업권을 양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.

나. 사업시행자 지위 및 실시계획인가

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,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,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‘그 밖의 재산권’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05734 판결 참조).

그런데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,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구 국토계획법령에 도시계획시설사업권의 양도·양수에 관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,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구 국토계획법 제95조에 근거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,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자체 또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, 그 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(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누318 판결 참조) 등에 비추어 보면, 구 국토계획법상 사업권은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,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.

그렇다면, B이 2016. 7. 15.자 사업시행자 변경동의서 제출을 포함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.

다. 무형의 사업권

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(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다카2832, 87다카2833 판결).

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제1선행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‘B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고, 경영악화로 골프장 조성공사를 중단한 채 폐업신고를 하였던 상황으로,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이 될 기능적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하였고,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·허가권자의 지위를 포함한 B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지위를 인수하고 B의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기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 B이 보유하고 있었던 권리와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, 이를 두고 B이 이 사건 사업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적·물적 권리와 의무가 피고에게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’는 취지로 판단하였고, 위 판결은 2021. 4. 29.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, 원고 주장과 같이 2016. 7. 15.자 사업시행자 변경동의서 제출을 포함한 이 사건 합의에 무형의 사업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인정사실과 달리 B이 이 사건 용역계약일(2016. 4. 2.)에 근접한 이 사건 합의 당시(2016. 7. 15. 내지 2016. 8. 9.)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이 될 기능적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16면 9행부터 10행까지의 “B이 이 사건 합의 당시 가지고 있던 위 각 허가에 관한 권리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”을 “이 사건 합의 당시 B이 가지고 있던 위 각 허가에 관한 권리의 재산적 가치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, 설령 피고가 그 허가권을 승계함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‘기 납부 부담금의 납부자 지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’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허가권 승계는 피고로 하여금 B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인 점 등”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20면 아래에서 3행의 “BE”을 “B”로 고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종우, 판사 장태영, 판사 신창용